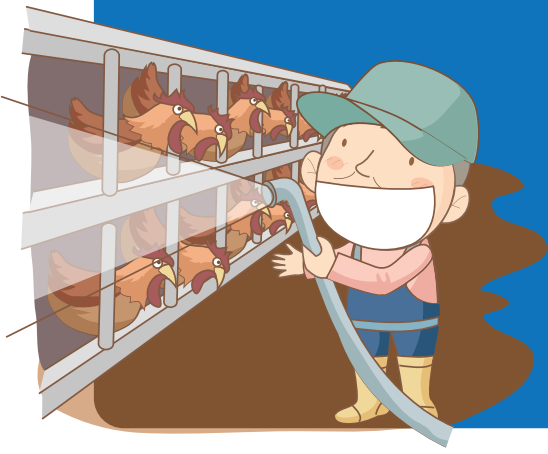


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한 축산차량 방역관리 행동요령



운행전 확인사항

- 1 차량무선인식장치(GPS) 장착 및 작동여부 확인
- 2 차량내 방역물품 점검
 -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전 상태, 비닐장화, 방역복, 마스크, 장갑 등
- 3 농가 방문 전 방문농가에 대해 방문 날짜, 시간 등 통보



→ GPS 장착



→ GPS 작동 확인

농장 또는 시설(도계·도입장)방문시 조치사항

- 1 출차시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, 비치되어 있는 “소독실시대장”에 기록(1차 소독)
- 2 “거점소독장소”에서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고 “소독필증” 발급(2차 소독)
- 3 “농장(시설)에 설치된 소독설비”를 통해 소독 실시, 차량에서 내리는 경우 전용 의복(방역복)과 신발을 착용한 후 차량 내부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(소독약) 등으로 충분히 소독한 후 하차(3차 소독)
- 4 대인소독기 통과 후 소독기록부 작성(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)
- 5 농장(시설) 내에서 가급적 종사자와 접촉하지 않고 농장에서 질병 발생의 징후를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신고
- 6 농장 출문 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오염된 방역물품 및 1회용 방역물품은 비닐용기에 밀봉처리 한 후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
- 7 차량의 적재함에서 깃털, 분변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*생축 운반 시 분변 등의 낙하 방지를 위해 가림시설 설치

축산차량 등록제란?

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**차량무선인식장치 (GPS단말기)**를 장착하여 **축산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·관리** 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이란?

가축·원유·알·동물약품·사료·**조사료**·가축분뇨·퇴비·양겨·**살겨·툼밥깎짚**을 운반하거나 진료·**예방접종**·인공수정·컨설팅·시료채취·방역·기계수리를 위하여 **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**입니다.

축산관계시설 : 가축사육시설, 도축장 및 집유장, 식용란 수집판매업소, 사료공장, 가축시장, 가축검정기관, 종축장, 부화장, 비료공장, 가축분뇨 처리업체

차량무선인식장치 장애 시

「차량등록제 운영센터 : 1544-3925」로 즉시 신고하시고, 불가피하게 축산시설을 방문한 경우 출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.

위반시 벌칙
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
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
-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·제거한 운전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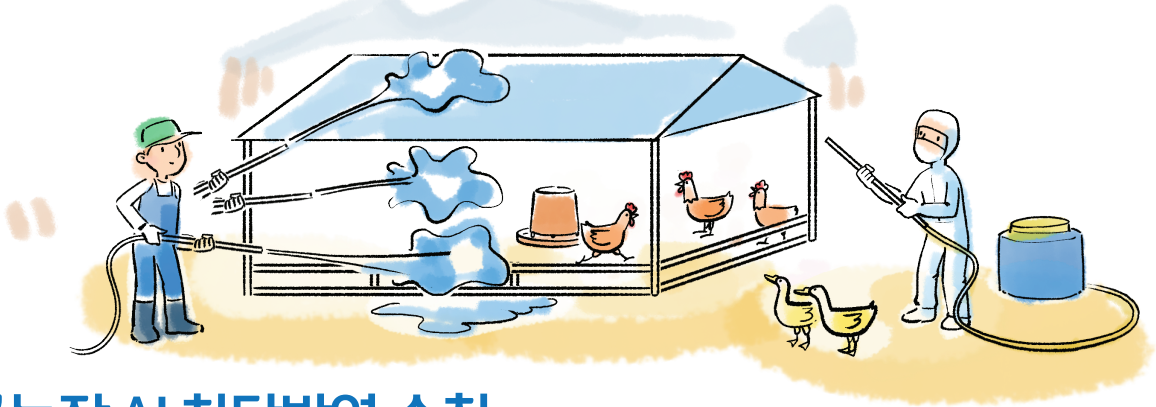
위반시 과태료

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-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
-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

가축방역 의심축 신고는 1588-4060(관할지자체)/1588-9060(농림축산검역본부)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

가금농장 AI 차단방역 수칙

- ① 농장 및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통제
- ②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출입 전·후 소독 실시
- ③ 농장 출입 전·후 소독(특히 손, 신발) 및 환복
- ④ 사료변 주변 사료 즉시 제거, 주기적 소독 실시
- ⑤ 쥐 야생조류 등 침입 방지용 헨스, 그물망 설치
- ⑥ 축사 출입 전 환복, 신발 교체를 위한 전실 설치, 축사 출입구 발판소독조 설치
- ⑦ 축사 내·외부 및 장비 등 철저히 소독

야생조류 우리 농장에 가까이 못오게 하세요!

※ 야생조류 차단방역 수칙이란? 야생조류에 의해 시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방안입니다.

- 1 야생조류의 접근과 철새분변과의 접촉을 차단하면 고병원성 AI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 2 축주, 가족, 농장 종사자도 외출 후, 귀가 시 신발과 의복을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.
- 3 철새 서식지나 도래지 주변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. (특히 농장주변 하천·논·밭 등)
- 4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주변을 청소하여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합니다.
- 5 축사 주변의 야생조류 분변을 관찰하고, 발견 시 수거 소각하고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.

가축방역 의심축 신고전화(국번없이)
1588-4060(관할지자체) / 1588-9060(농림축산검역본부)